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변경 등 >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변경 및 위원 결격사유 규정	4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변경	8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규정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11.
3. 회 부 일 : 2024.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정책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선거방송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가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법이 방송사·방송학계 등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고, 위원의 결격사유로는 단지 정당 가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방송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제외하고 대신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로 대체함(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송사 단체 또는 협회,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활동기간·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로 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 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때에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은 단체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마.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송사의 임·직원이거나 방송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변경 및 위원 결격사유 규정(안 제8조의2 등)

개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1. 2. (생략)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u>	<u>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제3호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활동기간·활동실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을 보유한 단체에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1.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협회

2. 방송학계

3. 대한변호사협회

4.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때에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은 단체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④ ~ ⑦ (생 략) 第8條의3(選舉記事審議委員會)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 이 경우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7. 방송사의 임·직원이거나 방송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① 第8條의3(選舉記事審議委員會) ①
--	---

~ ⑤ (생 략) ⑥ <u>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選舉記事審議委員會에 관하여 이 를 準用한다.</u> ⑦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u>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 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4항(제3호에 한정한다)・제5항 및 제7항의 규정</u>----- ⑦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제8조 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 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 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	--

	후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	---------------------------------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 변경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¹⁾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나 보궐선거 등의 기간 동안²⁾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97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방송위원회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1995년 지역민영방송의 확대와 종합유선방송 개시 등 방송시장의 확장³⁾에 따라 방송이 선거에 미칠 부정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3) 1980년대 언론통폐합 조치로 탄생한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KBS, MBC를 중심으로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 왔음. 이후 1990년 방송법 개정으로 민영방송이 허용되고 경쟁이 도입되면서 1991년 서울방송(SBS)이 개국되었고, 1995년(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97년(전주, 청주, 울산, 인천), 2001년(강원), 2002년(제주) 등 지역 민영방송이 도입되었음.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은 1995년 3월 시작되었음. 방

적 영향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음.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요사항 공표, 선거방송의 공정여부 자체조사 및 불공정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등 결정통보, 불공정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의결, 왜곡 선거방송에 대한 협의 불성립 시 반론보도 방송청구의 심의·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5월 10일에 임기를 마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선 선거의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그 중 14건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는 등 다소 과도한 제재 결정 등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는 등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관성 연구(2008)”

4) 방심위·선방위, 무더기 법정제재에 소송비용도 ‘역대급’, 경향신문, 2024. 5. 1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21447001>
선방위 안건 전수 분석...‘역대급’ 제22대 총선 선방위, 시사인, 2024. 5. 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92>

다만, 방송정책에 대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방송사와의 관계 등에서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방송심의기구의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 선거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한편, 개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방송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협회로 추천 기관을 변경하고 추천기관 중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활동기간·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2014.1.16.)

○전문위원 임재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위원 구성은 비슷할 수 있는데 밑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밑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민간인들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고 그것을 다 합쳐서 선관위로 가는 경우 그것을 다 공무원들이 한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총 9인 이내)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각 1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인 3.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각 1인) 2. <u>방송통신심의위원회</u> 추천 1인 3. <u>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협회</u> ·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먼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대신 위원 추천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소관 변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나, 선거분야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방송사 대신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3년 이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사 추천은 한국방송협회(지상파방송 협의체)와 종합편성채널이 교대로 위원을 추천해 온 바,

종합편성채널은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원 추천이 배제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3년 이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 추천 위원>

선거	성명	전·현직	위촉기간	추천기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윤○○	前)KBS 전주방송총국장 前)KBS 해설위원	2023.2.4. ~ 2023.5.5.	한국방송협회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윤○○	前)KBS 전주방송총국장 前)KBS 해설위원	2023.8.12. ~ 2023.11.10.	한국방송협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손○○	前)KTV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前)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2023.12.11. ~ 2024.5.10.	TV조선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김○○	前)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前)채널A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2024.8.17. ~ 2024.11.15.	채널A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중립성,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선거방송 심의의 전문성 및 역량적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언론보도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체제와 상충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규정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는 정당의 가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기존의 정당 가입 금지 외에 위원의 결격사유 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

현행	개정안
정당의 당원	1. 교육공무원, 대법관, 판사를 제외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3. 정당의 당원,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 미경과자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시부터 3년 미경과자 6. 선거방송 관련 사업 종사자,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선거방송 관련 사업 종사자 7. 방송사의 임·직원, 방송사 퇴직 후 1년 미경과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목적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기존에 없던 결격사유의 신설로 인한 진입 장벽의 설치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 필요성 및

방송 관련 전문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결격사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

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
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